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평가결과요약

지표분야	지 표 명	평가방법	가중치	등 급	득 점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	가.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다. 감사부서의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9 등급평가	<10>	D <sup>o</sup>	2.500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가. 윤리규정 및 지침준수 관리활동의 적정성 나. 사고관리 및 방지활동의 적정성 다. 내부통제제도 평가활동 및 개선노력	9 등급평가	<10>	D <sup>o</sup>	2.500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가. 감사활동의 방법 및 절차상 적정성 나. 내부감사실적 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과 성과 라.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 실적	9 등급평가	<20>	D <sup>+</sup>	7.500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 감사결과	가. 외부감사운영 또는 지원의 적정성 나. 외부감사결과 및 사후조치 실적	9 등급평가	<10>	C <sup>o</sup>	5.000
5.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가. 경영공시의 적정성 나. 청렴계약제도 운영, 청렴혁신 추진 실적 다.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경영 견제, 지원실적	9 등급평가	<20>	D <sup>+</sup>	7.500
6. 조직경영 성과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30>		24.224
평가종합			100		49.224

##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 가.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 상임감사는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교육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평가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상임감사로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떻게 전문성을 함양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고서에 의하면 상임감사는 조직 내부에서의 역할수행보다는 대외활동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 상임감사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감사기준>에 근거하여 공단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제도 정비가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07년의 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직무기준 준수 노력들이 어떻게 조직내부에 체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감사에서는 여전히 동일·반복적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다.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 감사부서는 경영, 세무, 재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충원이 되어 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외부 위탁교육의 내용도 회계감사, 내부감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에 대한 타부서 직원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부서의 다면평가를 단순히 배제하기보다는 평정에는 반영하지 않되, 업무개선에 참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 2.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 가. 윤리규정 및 지침준수관리 활동의 적정성

- 공단은 감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감사인의 자세 및 윤리의식을 명문화하고, 팀별 자율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팀별 반부패 청렴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윤리교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윤리행동강령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윤리의식 자기 점검을 수행하여 윤리의식 제고 및 확산에 기여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윤리규정 및 지침 점검활동이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 윤리규정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사고관리 및 방지활동의 적정성

- 공단은 사고방지를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 1,641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16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지부에 대한 회관 임대료 산정 및 계약투명성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수행하여 20건의 사례를 지적하고 9건의 개

선요구를 수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감사활동 이외의 사고 관리 및 방지를 위한 실적이 미흡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방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단은 부정부패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사이버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년 연속 부정부패 신고건수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사전예방활동에 의한 실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신고센터의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및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 내부통제제도 평가활동 및 개선노력

- 공단은 감사부서의 개선안 권고에 따라 외부행사 참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단내부 평가반 구성시 감사실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공단은 내부통제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공단은 기관 경영활동의 전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 3.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

#### 가. 감사활동의 방법 및 절차상 적정성

-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추진방향 및 종합감사계획은 감사직무규정 13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연간 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전략수립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하여 사전에 고려되었는지는 실적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 2007년 개정된 감사직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대상부서에 사전통고 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업무의 효율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예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일지 및 조서 관리 요약은 감사직무규정 23조에 의거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직무규정 21조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결과 보고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감사 종료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평가된다.
- 피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요구 최소화, 대면감사 축소 및 전산활용도 제고를 통한 효율적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대상부서의 감사 피로도를 낮추는 등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 나. 내부감사실적

- 중장기적 주요이슈 파악과 영향분석 항목은 실적보고서상에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 감사과제가 연간감사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감사부서 인원의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에 한정되

어 있으므로 향후 나머지 중장기 감사과제에 대해서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간 감사계획 이행 실적은 종합감사 2회와 특정감사 3회 총 5회를 수행하여 적정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 기존의 지적, 처벌 및 사후적발 중심의 감사활동을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수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2006년 9건의 의견서 발부건수가 2007년 16건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수시감사가 이루어지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 사전 예방감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반감사활동에 있어서도 기존의 지적 및 통보 위주의 감사활동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2007년 79건의 지적건수 중 40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처분양정 심의 절차는 감사직무규정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실적 보고서 상에서도 이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처분양정심의절차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과 성과

- 감사 수범사례 발굴 전파 및 표창수여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결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feedback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단은 감사결과 통보, 조치사항 확인, 조치사항 재확인 및



감사결과 공시 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관기관 최초로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감사사례 전파를 통하여 동일 위험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지적 사항 중 미결건수는 4건으로 사후관리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 종료 후 내부강평회 등 감사행위 feedback 절차와 피감사부서의 감사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실적보고서상에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라. 내부감사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혁신 실적**

-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재 내부감사시스템과 감사 정보공유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자체 문제점 분석 이후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써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써 1)내부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방향 제정, 2)생산성 지향의 전향적 감사업무 수행, 3)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감사지식방 개설 등을 추진한 것은 혁신실적으로 평가된다.
- 내부감사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혁신실적으로 제시한 상기 3개의 혁신사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및 적발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방안은 실적보고서상에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 현재 IT 기반의 운영프로세스로 인하여 기존 Off-line 감사위주에서 On-line 감사 위주로 감사체계가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산 data 수집이 용이하여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 효율성이 증대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과학적 감사대상 선정 기법 도입 등의 제도

혁신 분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감사기능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감사대상업무별 체크리스트 또는 감사업무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업무표준화는 부족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운영 실적 및 성과가 통상적인 기대수준에 약간 미흡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

####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 가. 외부감사운영 또는 지원의 적정성

- 감사원, 주무부처, 국정감사, 외부회계감사 등 외부감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내부 부서를 상대로 감사수감 요령을 교육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 '07년 외부회계감사법인 선정시 상임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외부회계감사법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실적이거나 해당 회계법인에게 위탁한 용역업무의 내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나. 외부감사결과 및 사후조치 실적

- '07 국정감사에서는 연금업무 협약은행 확대와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을 지적받았다.

- 이들에 대해 사학연금은 대체로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적절히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가 통상적인 기대수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 5.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가. 경영공시의 적정성

-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의 통합공시 점검 결과, 직원평균보수에 대해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시 위반 건수는 1건이지만, 그 위반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평균보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시 종업원 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원을 사용하여 직원평균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끔 공시한 것이다.
-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공시하는 등 경영공시를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다만 경영공시의 제도운영을 체계화하여 공시내용의 정확성, 충실도, 즉시성, 공시 기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렴계약제도 운영 등 청렴혁신 추진실적

-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제도적 측면

에서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 부패위험 자기진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지니고 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신고실적이 전무하다면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 사학연금의 예산낭비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인지 자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다.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 경영견제·지원 실적

- 총 8회 개최된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다. 하지만 이사회 개최 횟수 자체가 적고, 또 그 개진한 의견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요한 의견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상임감사가 이사회 이외에는 경영현안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얼마나 효과적인 경영견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부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 등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임감사가 감사평가 면담에 불참하여 경영진의 경영감시와 내부견제라는 감사의 기본 업무에 대해, 상임감사가 어떠한 철학을 지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혹은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 라. 청렴도 조사결과

- 사학연금은 '07년에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을 받았는데, 종합청렴도는 9.23점으로 연기금융기관 중에서 중위를 기록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에 약간 미흡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